

팩스, 우편, 인편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에 관한 면책약정서(기업용)

아래 서명 또는 날인한 법인고객(이하 “고객”)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이하 “은행”)은 ‘팩스, 우편, 인편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에 관한 면책약정’(이하 “계약”)을 20 年 월 일자로 체결하며, 고객은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“거래지시”(아래 제 2 조에 정의됨)를 할 경우, 은행이 계좌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원본지 시서를 징구하지 않고 아래 “금융거래”(아래 제 1 조에 정의됨)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 1 조 금융거래의 대상 및 종류

(1) 이 계약에서 “금융거래”라 함은 아래에서 고객이 선택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. 예금계좌(증권관리계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된 예금계좌뿐 아니라 향후에 개설될 예금계좌에 관련되는 금융거래를 포함한다.

-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 거래 관련 신청서, 확인서, 기타 지시서 등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보증서 및 보증신용장 관련 신청서, 확인서, 기타 지시서 등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좌해지 및 해지금액 이체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좌간 자금이체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 송금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_____) |

(2)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의 예금 관련 거래는 제외되며, 창구에서의 예금 관련 거래 시에는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등록된 거래인감이나 서명 및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거래하기로 한다.

제 2 조 거래지시의 방법 및 처리

(1) 이 계약에서 허용되는 거래지시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, 인감 또는 서명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1. 팩스에 의한 지시
2. 원본을 우편 또는 메신저, 고객직원을 통하여 은행에 전달하는 방법(은행의 담당직원 이 고객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경우 포함)에 의한 지시

(2) 고객이 거래지시를 은행에 보내는 경우에 당해 서비스 또는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 사전에 등록된 서명 내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

(3) 은행은 이 계약에 따른 고객의 거래지시를 따르기 전에 고객이 지정한 유선확인 대리인(별첨 참조)을 통해 유선확인(call back)을 하고, 고객은 팩스로 거래지시를 하는 경우 거래지시 후 15 영업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출한다.



- (4) 외국환거래법 또는 다른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를 위해 필요서류가 전부 제출되어야 한다.
- (5) 고객이 이 계약에 따라 연결계좌의 해지지시를 하는 경우, 은행은 그 해지금액을 근거계좌에 입금한다.

제 3 조 은행의 확인 의무 및 책임

- (1) 은행이 제 2 조에 따라 거래지시를 받을 경우에 은행은 육안을 통하여 거래지시서에 날인된 인감이나 서명과 당해 서비스나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 등록된 인감이나 서명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은행이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 거래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기로 하며, 이 와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- (2) 은행이 이 계약에 따른 거래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이행하게 되고, 만약 그 사유가 화재, 통신장애, 정전 등의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- (3) 고객은 (i) 이 계약에 따른 거래지시에 내재되는 위험(잘못된 전송이나 오류로 인한 전송 지연, 중단, 손상, 누락, 분실, 제 3 자에의 정보유출 및 은행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 등의 위험)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, (ii) 은행이 동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한다.
- (4) 거래지시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거래지시서에 표기된 각종 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 등)가 정확하지 않아 거래지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시스템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은행이 거래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은행은 거래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. 은행이 거래지시 내용이나 표기정보가 부정확 한 사유로 인해 거래지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은 거래지시 내용을 보완하여 은행에 거래지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은행이 고객의 예금계좌로부터 거래수행을 위한 자금을 인출한 후에 거래지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계좌에 동 자금을 다시 입금하기로 한다.

제 4 조 기타사항

- (1)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.
- (2) 이 계약이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되고, 한글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한글본 이 우선한다.
- (3) 이 계약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최소 1 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. 다만, 예금계좌와 관련된 계약은 고객이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가 모두

해지 될 경우에는 그 해지 시점에 자동으로 해지된다.

- (4) 이 계약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, 은행과 고객간의 해당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약관과 약정서에 따르며, 이 계약과 해당 약관이나 약정서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우선한다.

<은 행>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
_____ (인/서명)

주소 :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

전화번호 : _____

<고 객>

[_____] _____ (인/서명)

주소 : _____

전화번호 : _____

<별첨>

유선확인 대리인 지정서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이하 “은행)은 ‘팩스,우편,인편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면 책약정’ 제 2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유선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에 지정된 유선확인 대리인 과 연락하도록 수권받습니다. 본 지정서는 은행이 서면으로 본 지정서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 을 때까지 유효합니다. 유선확인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서면으로 통보 하기로 합니다. 유선확인 대리인 정보가 별지로 제공되거나 추가지면이 필요한 경우 서명/날 인된 별지는 본 지정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.

	유선확인 대리인 성명	직위	전화번호	대체전화번호	팩시밀리번호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날짜:

고객 기명날인 또는 서명
